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05

발의연월일 : 2026. 6. 5.

발 의 자 : 전용기・안태준・윤준병
김우영・서영교・백승아
이재관・강경숙・양부남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법률 제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2.·3. (생 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삭 제>
4.·5. (생 략)	3.·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